



발행일 2021년 04월 08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 현안분석

#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유지연\*·이덕난\*\*

- 01 I. 들어가며
- 02 II.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 06 III. 사이버 학교폭력의 실태
- 11 IV. 문제점
- 15 V. 개선과제

### 요약

□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사이버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 학교폭력은 대면-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및 교육부·교육청과 가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

- ①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②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③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등이 있음

□ **대면-비대면 병행교육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실태조사 항목 및 대응 매뉴얼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학교·교육청의 사이버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사이버 학교폭력 학부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02-6788-4706  
jiyeon.ryu@assembly.go.kr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02-6788-4702  
dnlee@assembly.go.kr



## I. 들어가며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사이버 학교폭력<sup>1)</sup>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더욱 증가하였고,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등 다른 피해유형 비중은 감소한데 비해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 비중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스포츠계 및 연예계 등에서 소위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의 양상이 ‘물리적 폭력’ 위주에서 ‘사이버폭력’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2)</sup>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 기기나 온라인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의미한다.<sup>3)</sup> 사이버폭력은 ①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파급력이 크며, ② 언어, 다양한 사진과 영상 등이 그 매개 도구가 될 수 있고, ③ 은밀하고 발견하기 어려우며, ④ 사이버폭력의 기록(흔적)이 복제·확산되는 지속성이 있고, ⑤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후유증을 동반하며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대면-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및 교육부·교육청과 가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등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학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학교와 가정의 초기 징후 발견 및 사후 대응에 어려움이 크며,<sup>4)</sup> 피해학생이 사이버 학교폭력 상황에 방치되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상 학교폭력 등의 정의 규정만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5)</sup> 지난 2012년 3월에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였으나,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및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규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넘나드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안조사 및 사안처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다.<sup>6)</sup>

1)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지 않았고, 사이버폭력에서도 학교폭력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사이버폭력과 학생 대상 사이버폭력이 사이버폭력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을 ‘사이버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기존의 문헌을 인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에 표기된 ‘사이버폭력’을 그대로 기술한 부분이 일부 있다.

2) 김나윤, 「카타·떼카·와이파이 셔틀…‘SNS 감옥’ 탈출구가 없다」, 『중앙선데이』, 2021.2.20.; 이덕난, 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8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3.10.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예방·디지털 역량교육”(최종 검색일: 2021.3.15.), <[https://cyberethic.edunet.net/cyberethic/newBoard/pageCyberExplan.do?menu\\_id=510](https://cyberethic.edunet.net/cyberethic/newBoard/pageCyberExplan.do?menu_id=510)>

4) 신영경, 「학교폭력도 ‘언택트’… 더 교묘해진 사이버불링, 피할 곳이 없다」, 『조선일보』, 2021.3.8.; 정여주 외, 『초·중등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5) 최민지, 「‘사이버 학폭’ 손쓸 법이 없다」, 『경향신문』, 2021.3.15.; 김수현, 「사이버학폭 늘어나는데…“현행 학폭법, SNS 2차 가해 못 막아”」, 『연합뉴스』, 2021.3.14.; 박찬구, 「‘단톡방 따돌림·악플폭탄’ 현행법만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서울신문』, 2021.3.13.

6) 김나윤, 앞의 글, 2021.2.20.; 김윤주, 「마음에 피멍… 집콕시대 더 악랄해진 ‘사이버 학폭’」, 『조선일보』, 2021.2.24.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사안 접수, 증거 확보 등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조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과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차 가해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도 다른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 어려움이 크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및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주요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 1.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제1호가 정의한 “학교폭력”에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2조 제1의3호는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끼리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하나의 용어로 종합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정보통신 기기나 온라인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sup>7)</sup> 그러나 학생 대상의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학교에서의 사이버 폭력은 교실과 복도 등 물리적 공간에서 스마트폰 기기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8항에 따라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유형에는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령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윤리 강화를 위한 사이버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예방·디지털 역량교육”(최종 검색일: 2021.3.15.),

〈[https://cyberethic.edunet.net/cyberethic/newBoard/pageCyberExplan.do?menu\\_id=510](https://cyberethic.edunet.net/cyberethic/newBoard/pageCyberExplan.do?menu_id=510)〉

한다”고 정의하였다.<sup>8)</sup>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대상에는 초·중·고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령상 근거는 찾기 어렵다.

## 2. 사이버폭력의 유형

교육부·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을 제작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게임 대리인) 강요’ 등으로 분류하였다.<sup>9)</sup> 그리고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이트를 운영·제공하고 있다.<sup>10)</sup> 이 사이트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도 학생·교사·학부모 및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2020년)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강요’ 등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up>11)</sup>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제시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이 유형들 가운데 2가지 이상 공통적인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등이고, 내용상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큰 항목은 사이버 성희롱/사이버 성폭력, 게임부주(게임대리인) 강요/사이버 강요, 사이버 음란물 유통/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유포/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다. 그리고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등은 학교 및 학생의 특성상 나타나는 사이버폭력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 사이버폭력 유형

교육부·학교폭력예방연구소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게임 대리인) 강요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유포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주 : 1) 2개 사례 이상 공통적인 것은 굵은 글씨로 표기함(3개 사례 공통은 파란색 굵은 글씨)

2) 내용상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큰 항목은 밑줄로 표기함

8)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19, p.6.

9)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1.

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예방·디지털 역량교육”(최종 검색일: 2021.3.15.),

<[https://cyberethic.edunet.net/cyberethic/newBoard/pageCyberExplan.do?menu\\_id=510](https://cyberethic.edunet.net/cyberethic/newBoard/pageCyberExplan.do?menu_id=510)>

11)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2.4.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사이버폭력의 유형 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부처별 관련 사업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므로 그 유형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별 예시상황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유형을 언어폭력, 강요, 금품갈취, 신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스토킹, 집단따돌림 등 8가지로 구분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있고,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예시문과 예시 상황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에서는 학교폭력 유형을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2] 참조). 이 유형들은 스토킹을 제외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8가지 유형과 유사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분류하였고, 언어폭력과 강요 등에도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예시상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표 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에 제시된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별 예시

유형	예시 상황
신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li> <li>•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li> <li>•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li> <li>•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li> <li>•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li> </ul>
언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b>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li> <li>• <b>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b></li> <li>• <b>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b></li> </ul>
금품갈취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li> <li>•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li> <li>•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li> <li>•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li> </ul>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칭 <b>빵 셔틀</b>, <b>와이파이 셔틀</b>, 과제 대행, <b>게임 대행</b>,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li> <li>•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li> </ul>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li> <li>•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li> <li>•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li> </ul>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 삽입하는 등의 행위</li> <li>•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li> <li>•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li> </ul> <p>[부록]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108쪽 참조)</p>

유형	예시 상황
사이버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 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li> <li>•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li> <li>•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li> <li>•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li> <li>•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li> </ul>

자료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1, pp.8~9.

다음으로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지원을 위해 제시한 사이버폭력의 유형별 예시상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지원 홈페이지에 제시된 사이버폭력 유형별 예시

유형	해당 내용
사이버 언어폭력	문자나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시판 비방글, 악성댓글, 욕설 등의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사이버 모욕: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언어나 비언어에 의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 (은유적 표현으로 ‘저격’이라고도 함)하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관계’적인 괴롭힘(bullying)으로 사이버상에서는 주로 떼카, 카톡감옥 등의 사이버 감금이나 따돌림의 행위
사이버 갈취	사이버 머니, 금품 갈취형으로 주로 와이파이셔틀, 게임머니, 중고나라 사기 등 사이버상의 갈취 형태의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예: SNS상의 쪽지나 댓글 등 반복적으로 보내어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영상 유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나 각종 유해성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

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예방·디지털 역량교육”(최종 검색일: 2021.3.15.),

<[https://cyberethic.edunet.net/cyberethic/newBoard/pageCyberExplan.do?menu\\_id=510](https://cyberethic.edunet.net/cyberethic/newBoard/pageCyberExplan.do?menu_id=510)>;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과연계 중·고등학교 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KERIS, 2020 내용을 표로 작성함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학생, 학부모, 교사,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유형별 정의 및 예시를 다음의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제시된 사이버폭력의 유형별 정의 및 예시

유형	정의 및 예시
사이버 언어폭력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누구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문자(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신상정보 유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인터넷, SNS 등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정보(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를 유포시키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지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
사이버 갈취	인터넷에서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는 행위
사이버 강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19, p.6

### Ⅲ. 사이버 학교폭력의 실태

#### 1. 학교폭력 실태조사

##### (1) 관련 법령 및 조사 개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8항은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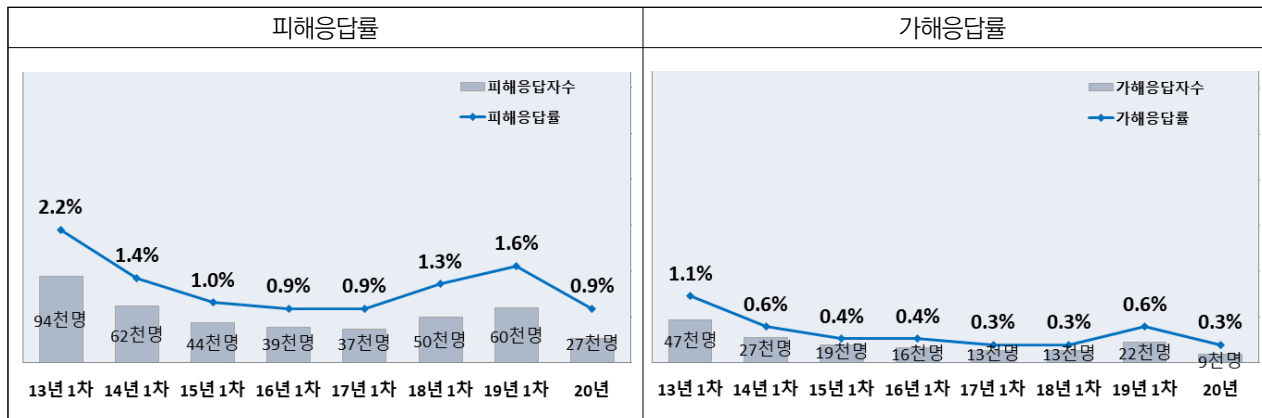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2회 실시(4월 전수조사, 9월 표본조사)되어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회로 축소되어 2020년 9월에 시행되었다.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기간 및 방법: 2020.9.14.~10.23.(6주), 온라인 조사
- 대상: 초4~고2 재학생 전체(약 357만 명)
- 조사 참여율 : 82.6%(약 295만 명)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조사 진행
- 조사내용: 2019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및 인식
- 조사주체: 전국 시·도교육감(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

##### (2)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초·중·고교 학생 중에서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응답한 학생 중 피해응답률은 0.9%이고 이는 2019년 1차 조사(1.6%) 대비 0.7%p 감소하였다. 가해응답률은 0.3%이고 이는 2019년 1차 조사(0.6%) 대비 0.3%p 감소하였다.

[그림 1] 연도별 학교폭력 실태조사(2013~2020년): 조사 응답자 중 학교폭력 피해·가해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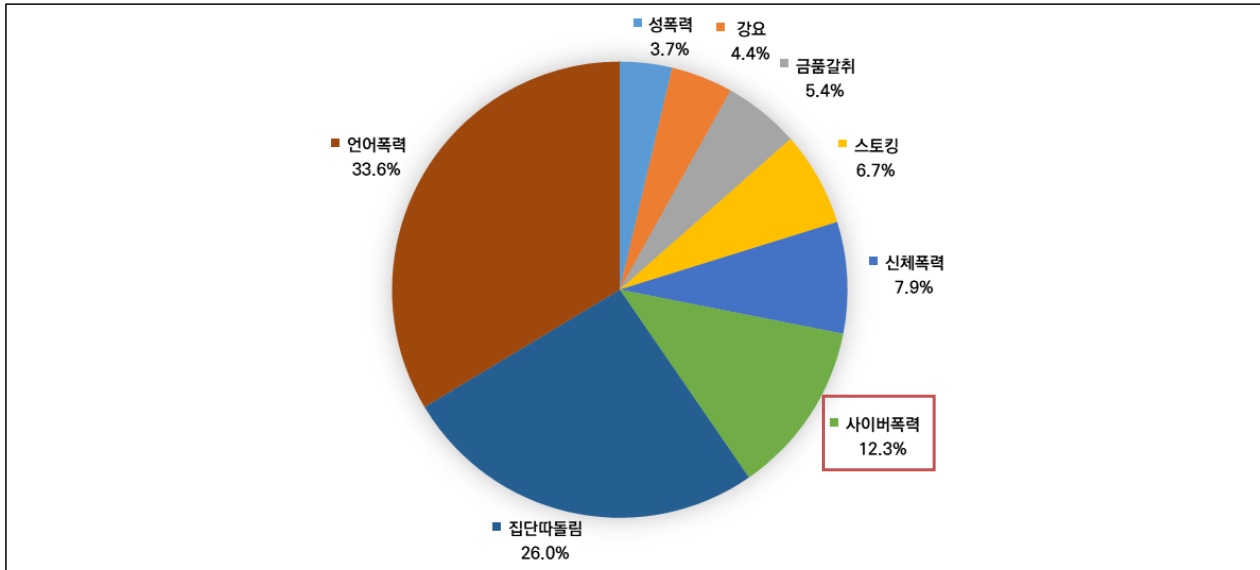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1.21.



학교폭력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폭력은 12.3%로 언어폭력(33.6%)과 집단따돌림(26.0%)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 응답 건수로 살펴보면, 언어폭력 4.9건, 집단따돌림 3.8건, 사이버폭력 1.8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별 응답률



자료 :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1.21., p.2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프로 제시함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은 2016년에 9.1%에서 2017년(9.8%)과 2018년(10.8%)에 계속 증가하였고 2019년(8.9%)에 감소하였으나, 2020년(12.3%)에 전년 대비 3.4%p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대폭 감소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언어폭력과 스토킹, 신체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는 감소하였으나, 사이버폭력(3.4%p)과 집단따돌림(2.8%p)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연도별 학교폭력 실태조사(2013~2020년): 피해유형별 응답률

(단위: %)

구분	2013년 1차	2014년 1차	2015년 1차	2016년 1차	2017년 1차	2018년 1차	2019년 1차	2020년	증감 (%p)
언어폭력	34.0	34.6	33.3	34.0	34.1	34.7	35.6	33.6	△2.0
집단따돌림	16.6	17.0	17.3	18.3	16.6	17.2	23.2	26.0	2.8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6.7	△2.0
신체폭력	11.7	11.5	11.9	12.1	11.7	10.0	8.6	7.9	△0.7
<b>사이버폭력</b>	<b>9.1</b>	<b>9.3</b>	<b>9.2</b>	<b>9.1</b>	<b>9.8</b>	<b>10.8</b>	<b>8.9</b>	<b>12.3</b>	<b>3.4</b>
금품갈취	10.0	8.0	7.2	6.8	6.4	6.4	6.3	5.4	△0.9
성폭력	3.3	3.8	4.2	4.5	5.1	5.2	3.9	3.7	△0.2
강요	6.1	4.7	4.2	4.3	4.0	3.9	4.9	4.4	△0.5

주: 1) 피해유형별 중복응답 가능, 중복응답 건수 기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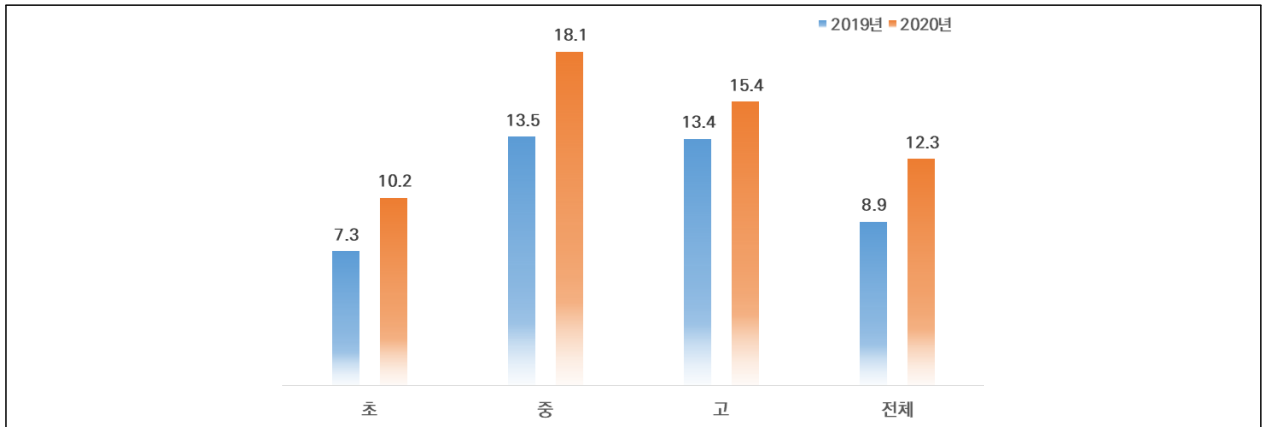
2) 매년 1차 조사는 전수조사로 실시하므로 1차 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분석·제시함

자료 :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1.2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20년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 피해 비중은 초등학생 10.2%, 중학생 18.1%, 고등학생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대폭 감소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초등학생의 경우 2.9%p 증가하였고, 중학생 4.6%p, 고등학생 2.0%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급별 사이버폭력 피해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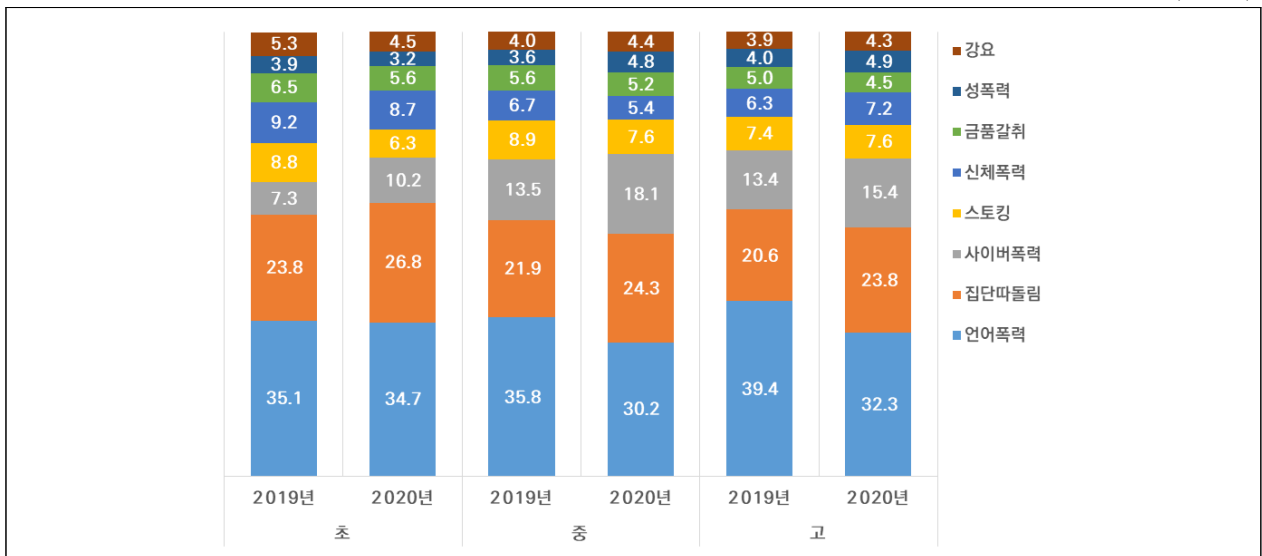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1.21.

학교급별로 2019년과 2020년의 전체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2019년에 7.3%에서 2020년에 10.2%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피해 경험 및 가해 경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학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림 4] 2019년과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급별 사이버폭력 피해 비중

(단위: %)



자료 :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1.21.

## 2.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1) 조사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는 학생·교사·학부모·성인 대상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는 사이버폭력 경험 및 인식 현황 등을 파악하여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는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등 7,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개요는 다음의 [표 6]과 같다.<sup>12)</sup>

[표 6]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개요

구분	정량조사				정성조사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서면인터뷰
조사 방식	대상 학교 컨택 후 담당 교사를 통한 온라인 조사 링크 공유		온라인 패널 조사		대상자 컨택 후 온라인 링크 공유
응답 대상자	초(4~6학년)·중·고등학생	조사 대상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담당교사	조사 대상 학생의 학부모	20~50대 성인 남녀	(교사) 초·중·고 담임교사 (학부모) 초·중·고 자녀의 학부모 (상담사) wee센터 소속 상담사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조사 규모	4,958명	300명	700명	1,500명	교사(남/녀), 학부모, 상담사 등 대상별 8명씩, 총 32명
표본추출방법	층화계통추출로 대상 학교 추출 후 조사 대상 학급 무작위 선정			인구비례 할당	임의추출
조사 기간	2020.10.6. ~ 11.13.				2020.12.15.~12.21.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2.4., p.5

### (2)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4~6학년)·중·고교생 대상 조사에서 2020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피해+가/피해)은 19.7%이고, 가해 경험률(가해+가/피해)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피해 경험률은 2019년(19.0%) 대비 0.7%p 상승하였다. 가·피해 동시 경험 비율을 제외한 순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만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 13.3%이고 이는 2018년(8.6%)과 2019년(8.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피해 동시 경험 비율을 제외한 순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은 2018년에 8.6%에서 2019년 7.9%, 2020년 3.1%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률과 순수 피해 경험률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가해 경험률과 순수 가해 경험률은 모두 감소한 원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0년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9.5%) 중 가·피해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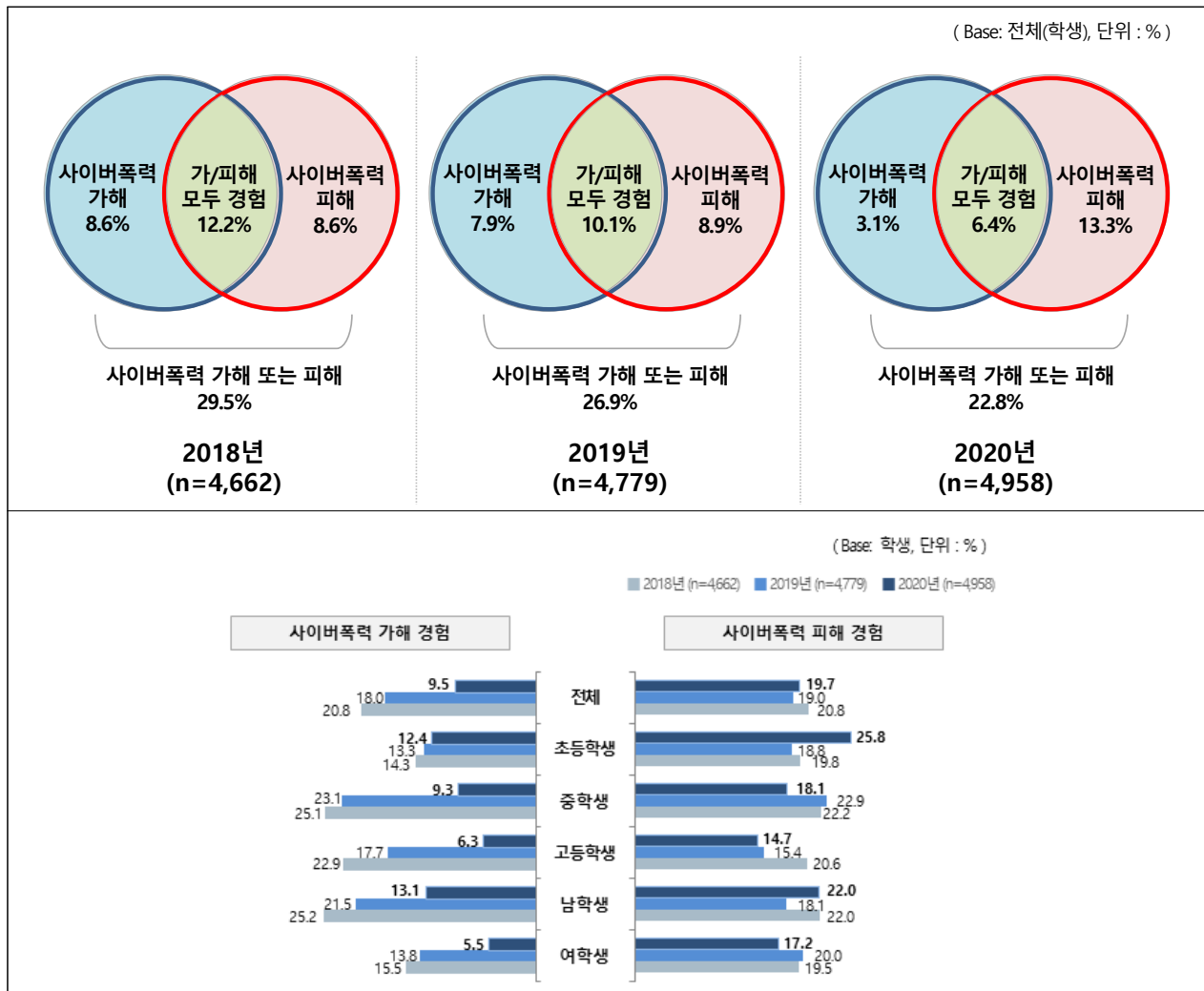
12)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2.4.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6.4%)의 비율이 67.4%이고,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19.7%) 중 가·피해 모두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6.4%)의 비율(32.5%)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3)</sup> 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는 그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적어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될 수 있고,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급별로 연도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에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초등학생 25.8%, 중학생 18.1%, 고등학생 14.7%로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중학생의 피해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림 5 |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초·중·고교생 대상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2.4., p.22

13)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2.4., p.22.

## IV. 문제점

### 1.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1의2호와 제1의3호에서 학교폭력의 정의 중에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및 제1의3호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하나의 용어로 종합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에 대응해야 하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이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사안조사 과정에서 모호한 상태에서 응답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14)</sup> 이에 대해 현행법을 해석하면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고, 학교폭력의 정의 외에 추가적인 용어 정의는 법 체계 및 내용상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들을 해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14) 유지연,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배준영 국회의원, 2021.2.18.; 김혜주, 「‘2020년 학교폭력 경험’ 응답률 감소…사이버 폭력·집단 따돌림 경험 비중은 증가」, 『KBS NEWS』, 2021.1.21.; 김수현, 「학생 0.9% 학교폭력 피해…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비중 늘어」, 『연합뉴스』, 2021.1.21.; 배양진, 「‘카감’ 갇혀 ‘떼카’…기자가 당해본 ‘사이버폭력’」, 『JTBC 뉴스』, 2021.2.26.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학교폭력의 정의 중에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제1의2호와 제1의3호를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돌림”은 지난 2012년 1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신설되었고, 별도의 호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였다”고 제시하였다. “사이버 따돌림”은 지난 2012년 3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신설되었고, 별도의 호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렵게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제시하였다.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전병헌의원안(2012.1.17.)<sup>15)</sup>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학교폭력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24시간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가해 학생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기 어렵고, 일선 학교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사이버 따돌림 행위에 대한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법률안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sup>16)</sup>에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2012년 1월과 3월에 연이어 법률을 개정하면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를 각각 별도로 신설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유형으로 인한 혼란과 모호성 등을 해소해달라는 교육현장의 요구에 대해 국회가 공감하고 빠르게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이버 따돌림이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추가된 후 9년이 경과한 현재 사이버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처벌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sup>17)</sup>

전체적인 사이버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통일된 법률 규정이 없고,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에 포함된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별 처벌 및 규제에 관한 내용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8)</sup>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교육현장의 교원과 학교 등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관련 규정과 타법의 관련 규정을 해석적으로 적용하여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sup>19)</sup>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 2.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sup>20)</sup>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2012.1.17.)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 2012.2.)

17) 김나윤, 앞의 글, 2021.2.20.

18) 이승현, 김지현, 이원상,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pp.56~60.

19) 김나윤, 앞의 글, 2021.2.20.; 김윤주, 앞의 글, 2021.2.24.

20)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1.21.

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를 2019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학교폭력 피해·가해응답률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사이버폭력은 집단 따돌림과 함께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초·중·고교생 대상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2020년에 13.3%로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sup>21)</sup>는 사이버 학교폭력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 “원격수업 등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폭력과 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2021년에도 비대면 상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폭력과 스토킹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sup>22)</sup>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 협력하여 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과 캠페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2020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경험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2월 중에 수립·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다시 4월 초 발표예정으로 연기된 상태이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살펴보면, 2020년에 초등학생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중이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2020년 초등학생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25.8%이고, 중학생(18.1%) 및 고등학생(14.7%)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초·중·고교생 중 사이버폭력 가·피해 동시 경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을 고려한 대응 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와 학교 등이 초기에 대응하는 데에 다른 학교폭력에 비해 어려움이 크고, 교육현장의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 등의 전문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사이버 전문가가 아닌 교사로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이버에 능숙한 학생들이 사안 초기에 기민하게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음

2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이버폭력 급증은 비대면 교육의 또 다른 그늘, 언택트 시대 반영한 학교폭력 종합대책 수립해야」, 『보도자료』, 2021.1.21.

22)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1.21.

성화되는 경향도 있어서 교사와 학교가 학내에서 대응 및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sup>23)</sup>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을 살펴보면,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초기 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평소 예방교육
  - 휴대전화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하도록 지도한다.
  -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하도록 안내한다.
- 피해학생 조치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 가해학생 조치
  - 교사가 증거를 철저히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화면 온라인 상 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이버 폭력 유형이 포함되어 있고,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중점파악 요소에는 “명의로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7] 참조).

**표 7 |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 유형	중점 파악 요소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 폭력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b>사이버 폭력</b>	<b>명의로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b>

자료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1, p36.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에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행위 등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와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위해 어떤 방법과 절차 등을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 대응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을 대비하여 학교와 교원이 사전에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역량도 필요하고,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사안조사 실시 과정에서 신속하게 기술지원 또는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나,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사안조사에서 사

23) 정여주 외, 앞의 글, pp.39~43.



실 확인을 위해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화면 온라인 상 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육현장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 확보 및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경찰이나 전문가가 아닌 교사로서 한계가 있고 필요시 인력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sup>24)</sup> 그리고 사이버 학교폭력 상황을 고려한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수시로 파악하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한 연구에서 실시한 학부모 요구조사를 살펴보면,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을 이해하고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 V. 개선과제

### 1.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추가 및 그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신설하여 교육현장의 혼란과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과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와 제20조의3 등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규정 등을 해석하여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up>26)</sup>

2012년 1월에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되어있던 “따돌림”을 별도의 호로 신설하여 정의하였고, 같은 해 3월에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시키고 “사이버 따돌림”을 별도의 호로 신설한 선행 입법례가 있다.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의 학교폭력의 정의와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교육현장의 실제와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별도의 호로 각각 신설하였다.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의 증가 추세와 현장의 요구를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도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27)</sup>

일부에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유형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폭력’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정의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란·폭력정보를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sup>28)</sup>

24) 정여주 외, 위의 글, 2020., pp.39~43.

25) 정여주 외, 위의 글, 2020., pp.162~170.

26) 유지연, 앞의 글, 2021.2.18.

27) 교육부, 앞의 글, 2021.1.21.

28) 이승현, 김지현, 이원상, 앞의 글, 2015, pp.387~388.

제21대 국회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2021.3.12.)이 1건 발의되었고, 이 법률안은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폭력’으로 변경하고,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의도적으로 협박, 약취, 모욕 등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체·정신·재산의 피해를 끼치거나 상대방이 공포·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국회 교육위원회 000의원도 최근 급증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해행위의 매개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에서 나사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며,<sup>29)</sup> 향후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법 대책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제1의4호를 신설하여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추가하고,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행위 중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도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하나의 용어로 종합하여 규정하고, 교육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다.

위와 같이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추가할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시·도교육감 공동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유형과 교육부가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는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실태조사 항목 및 대응 매뉴얼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실태조사와 가이드북 등에 주요한 피해 유형 중 하나로 사이버폭력이 제시되어 왔고, 이는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조사 및 대응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정책을 마련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수준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과 최신 동향, 대응 정책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교원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29) 오푸름, 「‘사이버 학교폭력’ 급증에… 국회, 대책 논의 활발해져」, 『조선에듀』, 2021.3.11.

현재 교육부는 정책중점연구소 가운데 학교폭력예방연구소(이화여자대학교 2012.7.30. 선정)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위탁 실시하는 연구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있다. 이들 기관의 경우에도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응 기능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면 교육부가 제작하여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에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행위 등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시에 학교와 교사 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학교폭력 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고([부록 3]), ①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② 성폭력 사안의 신고, ③ 성폭력 사안조사 및 조치 등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초기 대응과 피·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에 대해 별도로 안내되어 있다([부록 4]).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안처리 및 대응책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과 최신 동향 등을 연구하고 정책 마련 및 현장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 등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단위의 학교폭력 전문기관 및 위탁 운영 기관·단체 등에 대해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컨설팅 및 연수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에 국가 수준의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기관 지정·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에 대한 규정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규정되어 있고, 이 기관들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므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3. 학교·교육청의 사이버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설치한 전담부서나 전문기관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상담, 치유, 사안처리 등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기관이 지정될 경우 이 전문기관과 연계·운영할 필요도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대면/비대면 컨설팅 및 전문 인력 파견 등을 통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9항은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은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조사·상담 등의 업무, 피해학생·가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제2항은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전담부서·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기관·단체 위탁 방식으로 시·도교육청 단위의 업무를 수행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Wee센터<sup>30)</sup>나 관련 상담기관에 사이버 학교폭력 상담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관련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상담전문가이고, 사이버 학교폭력 상담전문가는 부족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조사, 학교 지원, 교원 연수 등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sup>31)</sup>

사안처리 전문화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정기적 연수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에 사이버 학교폭력 연수 포함 등)을 통해 상담·치유 관련 기관 및 학교의 관련 인력에 대해 사이버 학교폭력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상담사례를 공유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및 교육청에는 이와 같은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학교 내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 등 담당자가 다른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오히려 가볍게 여겨 사안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교사 등 담당자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이버 학교폭력을 다른 학교폭력보다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sup>32)</sup>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및 제11조의2가 규정한 교육감의 임무와 학교폭력의 조사·상담과 그에 대한 시·도교육청 단위의 학교폭력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 등의 기능에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사이버 학교폭력 학부모 교육 강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협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

30) Wee는 We(우리들),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Wee센터는 시·도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설치되어 있음. Wee센터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1) 이승현, 김지현, 이원상, 위의 글, 2015, p.408.

32) 이승현, 김지현, 이원상, 위의 글, 2015, p.390.

교육 등)<sup>33)</sup>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학부모 대상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행, 2차 가해 행위 금지 등에 대해 학부모가 제대로 알고 적시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현행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별도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부모교육 전문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등), 사이버교육 전문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등에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강좌를 개설하고, 학부모 대상 연수를 비대면의 방식으로 실시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 제15조 제2항을 개정하여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별도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가가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 참고문헌

- \*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1.21.
-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1.
- \* 김수현, 「사이버학폭 늘어나는데…“현행 학폭법, SNS 2차 가해 못 막아”」, 『연합뉴스』, 2021.3.14.
- \* 김윤주, 「마음에 피멍… 집콕시대 더 악랄해진 ‘사이버 학폭’」, 『조선일보』, 2021.2.24.
- \* 김혜주, 「‘2020년 학교폭력 경험’ 응답률 감소…사이버 폭력·집단 따돌림 경험 비중은 증가」, 『KBS NEWS』, 2021.1.21.
- \* 박찬구, 「‘단톡방 따돌림·악플폭탄’ 현행법만으론 막을 길이 없다」, 『서울신문』, 2021.3.13.
- \*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2.4.
-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19.
- \* 배양진, 「‘카감’ 갇혀 ‘떼카’…기자가 당해본 ‘사이버폭력’」, 『JTBC 뉴스』, 2021.2.26.
- \*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 2010년대 초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범정부적 실용적 대책 필요」,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토론회, 배준영 국회의원, 2021.2.18.
- \*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0, pp.145~169.
- \* 이덕난, 유지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35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1.5.
- \* 이덕난, 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8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3.10.
- \* 이덕난, 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NARS 현안보고서』, 제10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12.24.
- \* 이승현, 김지현, 이원상,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 정여주 외, 『초·중등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 \* 최민지, 「‘사이버 학폭’ 손쓸 법이 없다」, 『경향신문』, 2021.3.15.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이버폭력 급증은 비대면 교육의 또 다른 그늘, 언택트 시대 반영한 학교폭력 종합대책 수립해야」, 『보도자료』, 2021.1.21.

## R E P O R T · L I S T

##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192호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 과제	2021.4.7.	허민숙
제191호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	2021.4.2.	김도희
제190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 역대 정부별 비교와 합의	2021.3.22.	전진영
제189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2021.3.10.	이덕난 유지연
제188호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2021.2.22.	이수환
제187호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 ②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주요 현안 -	2021.1.4.	강지원 최은진
제186호	우리나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과 개선과제	2020.12.31.	유웅조
제185호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② 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 1 -	2020.12.31.	박재영
제184호	국제바칼로레아(IB) 운영 현황 및 국내 도입을 위한 과제: 고등학교 교육과정(IB DP)을 중심으로	2020.12.31.	조인식
제183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주요 특징과 향후과제	2020.12.31.	정민정 김예경
제182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2020.12.30.	김준헌
제181호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① 벤처기업 성장과 의결권(議決權)주식 -	2020.12.29.	박재영
제180호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2020.12.17.	김리사
제179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2020.12.16.	김진선
제178호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현황과 과제	2020.12.10.	정준화 신용우 권성훈
제177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	2020.12.9.	박선권
제176호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 ① 국가자금 투입과정 및 방식 검토 -	2020.12.2.	김경신 이수환
제175호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2020.11.20.	최진웅
제174호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20.11.18.	서은철
제173호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2020.11.18.	김경신 이수환

제193호

NARS

## 현안분석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